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고, 잠정인증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잠정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을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절차 없이 즉시 통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12조, 제26조)

-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 등을 단축하고자 함

나.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제19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 338 - 4712
- 팩스 : 061) 338 - 4719
- 전자우편 : niceseo@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참고사항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 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단서 규정으로 추가한다.

제19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제2항 “30일”을 “15일”으로 한다.